

# 안산시 노인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49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노인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목욕권을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·미용까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정비,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명확화, 이용권 사용기간 규정,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목욕권을 이·미용까지 사용가능한 이용권으로 용어 정비  
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
  - 지원대상 제외 기준 마련 (안 제2조)
  - 이용권 지급 범위 조항 신설(안 제3조 제3호)
- 이용권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5조 제2항)
-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리 조항 신설(안 제8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3

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0. 9. 17. ~ 2020. 10. 8. (21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## < 불임 1 >

#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 및 이·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대상)**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말한다. 다만,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 입소생활자와 장기입원자(90일 이상), 정부나 자치단체,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·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3조(지원기준)**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처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.
2.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.
3. 이용권은 연간 1인 20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**제4조(지원방법)**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, 동장은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이용권의 사용)** ① 이용권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안산시 소재 업소 중 협약이 체결된 협회에 속한 참여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.  
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.  
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**제6조(요금의 정산)** ① 시장은 목욕, 이·미용 각 대표협회장(이하 “각 대표협회장”)

이라 한다)과 이용권 사용 및 요금정산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.

② 각 대표협회장 또는 협회에 속한 업소장은 제1항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,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받은 요금을 매월 말일 이내에 각 업소에 개별 입금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이용권의 수급관리)** 동장은 이용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환수처리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정산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2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노인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과장 김영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인정책팀장 두현지
	담당자 성명·전화	국미호 (행정 3533)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이용권 대금 청구서

업소명		대표자		전화번호	
사업명					
청구금액	금 원 (₩ )				
이용매수	매				
예금주명		금융기관		계좌번호	
이용기간	20	.	.	~	20

「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금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인)

### 안산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이용권 2.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(최초 청구 시 1회에 한함) 3. 통장사본
------	--

[별지 제2호서식]

# 이용권 배부대장

## ( 동 행정복지센터)

#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493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월 28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이·미용권을 추가 지원하는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나,
- 현금 지급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사업명을 수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음.

## □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”로 수정
- “이·미용”을 “이·미용 바우처”로 수정(안 제1조)

# **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지원 조례”를 “안산시 노인 목욕  
및 이·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이·미용”을 “이·미용 바우처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지원 조례</p>	<p>안산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</p>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 및 <u>이·미용</u>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·미용 바우처</u> -----</p>